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32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4월 29일
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I. 수정이유

- 용어를 통일하고,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관련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, 제4조 및 제10조).

II. 주요내용

가. ‘어린이·청소년’이라는 용어를 삭제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나.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규정을 삭제함(안 제10조).

III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5호 중 “어린이·청소년 방과후활동”을 “방과후활동”으로 하고, 안 제4조제3항 중 “학교-지역사회 협력에 의한 어린이·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”를 “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”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“위원장, 부위원장”을 “위원장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1.~4.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1.~4.(현행과 같음) 5. <u>어린이·청소년 방과후 활동</u> 지원 사업	제3조(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 1.~4.(현행과 같음) 5. <u>방과후활동</u> 지원 사업
제4조(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교육감은 <u>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</u> 「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략)	제4조(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은 <u>학교-지역사회 협력에 의한 어린이·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</u> 「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	제4조(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은 <u>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</u> 「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에 <u>위원장과</u> 간사를 둔다 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에 <u>위원장, 부위원장,</u> 간사를 둔다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부재시에 그 업무를 대리한다.</u>	제10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에 <u>위원장과</u> 간사를 둔다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본문 중 제3호 중 “학교 밖”을 삭제하고,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“방과후활동 지원 사업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에 “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”을 “관련 주요 사항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협력”을 “혁신교육지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학교 밖</u>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.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.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6.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7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>제4조(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교육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단체 및 위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방과후활동 지원 사업</u> 6. 자치구 교육 특화 사업 7.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정책 연구 및 조사 8.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~ <p>제4조(혁신교육지구의 지정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위탁기관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혁신교육지구 운영 <u>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 방향</u> 협의</p> <p>2.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와 교육청 단위의 <u>협력</u> 사업 추진·조정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협의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7조(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관련 주요 사항</u> --</p> <p>2. ----- ----- <u>혁신교육지구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